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 -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조의2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- 나. 검토의견

**1) 개정 이유**

-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**2) 주요 내용**

- 안 제1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함

기존	연장
2023년 12월 31일	2028년 12월 31일

**다. 검토의견**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